



서울신용보증재단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「장애인기업 특별보증」 취급기준 개정(안)

장애인 기업 대상확대 및 보증료율 감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 성장
도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취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

- 다 음 -

1. 개정근거

- 가. 중소기업청의 「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시행지침 개정 알림」
(기업금융과-492, '16.06.03.)
- 나.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「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취급기준 개정·시행 알림」
(보증지원부 2016-13994, '16.06.08.)

2. 주요 개정내용

구 분	변경전	변경후	
지원대상	(신 설)	<u>고업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자</u>	
보증료율	1.0%	<u>0.7%</u>	
운전자금 50백만원 초과 보증한도 사정방법	당기 신고매출액의 1/3, 최근 4개월 신고매출액	<u>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</u>	<u>기타 업종</u>
		<u>[아래 ①, ②중 큰 금액] ① 당기매출액의 1/3, 최근 4개월 매출액 ② 소액보증금액한도표상 보증한도 × 150%</u>	<u>[아래 ①, ②중 큰 금액] ① 당기매출액의 1/4, 최근 3개월 매출액 ② 소액보증금액한도표상 보증한도 × 130%</u>

3. 시행일 : 2016년 6월 13일(월) (신청서 접수일 기준)

- 붙임 : 1. 장애인기업 특별보증 취급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.
2. 장애인기업 특별보증 취급기준 개정前 전문 1부.
3. 장애인기업 특별보증 취급기준 개정後 전문 1부. 끝.

과장

팀장

부장

이사장

협조자 전략기획실장

시행 보증지원부-349 (2016.06.10.) 접수 ()

우 0413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 17층 / <http://www.seoulshinbo.co.kr>
전화 / 02-2174-5212 /전송 02-3278-8117 / pym1222@seoulshinbo.co.kr / 공개